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30. 강경숙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4. 7.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12차 전체회의(2024.11.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강경숙의원)

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에 따른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학생 교육·지도 권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4조제2항 신설).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보장 규정이 신설될 경우,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 권한이 교원에 대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생

활지도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교육기본법」은 교원에 대해 규정한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며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습자에 대해 규정한 제12조에서 학생이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에 대해 규정한 제13조에서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학생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규정함.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은 법에서 정하는 사유 등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음.

또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육활동과 생활 지도를 교원의 임무 및 권한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의무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존중·지원,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원의 신분보장, 권리구제,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교육기본법」과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생활지도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 개정은, 현행 법률과의 체계,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더욱 두텁게 규정하는 취지에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정안의 내용이 다른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며, 개정시에도 다른 조문과의 균형을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교원에 대한 보장 내용 명료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수정안 본문, 수정안조문대비표)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교원에 대한 보장 내용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을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으로 수정하고, 현행법상 필요 사항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하여 “법령과 학교의 규칙”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로 수정하며, 법률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의 “학교”, “보장되어야 한다”를 현행법 같은 조에 규정된 “학교교육”, “보장된다”로 각각 수정함(안 제14조제2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학교”를 “학교교육”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을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으로 하고, “법령과 학교의 규칙”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로 하며, “보장되어야 한다”를 “보장된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4조(교원) ① (생략) <u><신설></u>	제14조(교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u>	제14조(교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u>
② ~ ⑥ (생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③ ~ ⑦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원) ① (생략) <u><신설></u>	제14조(교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된다.</u>
<u>② ~ ⑥</u> (생략)	<u>③ ~ ⑦</u>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